



# 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-19 「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」 관련 재안내

## 1. 관련

-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33517(2022.12.26), 학생건강정책과-10271(2022.12.27)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509(2022.1.9.)

2. 지난 '22.12.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'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' 등을 일부 보완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제13-1판 수정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였으나,

- 배포된 내용 중 “ V. 확진환자 대응방안 4.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”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경과 시기를 재검사 필요 시기로 받아들여 불필요한 검사 증가와 양성 확인 시 관리 부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아래 사항을 재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각 기관에서는 공문 접수와 동시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재안내 사항

- 12.27일 안내된 재검출 사례 정의 기준 적용 중단하고

「코로나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제13-1판('22.8.12)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

※ 그 외 변동사항 없음

쪽	'22.12.27 안내	지침 13-1판('22.8.12)
<b>V. 확진환자 대응방안</b>		
42	4.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. 사례정의 ○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○ (단순 재검출)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 재검출된 경우 ○ (재감염 추정)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	4.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. 사례정의 ○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○ (단순 재검출)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, 임상증상 없는 경우 ○ (재감염 추정)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▶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▶ 최초 확진일 이후 45-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여행력)이 있는 경우
	(삭제)	

끝.

## 교육부장관

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손승의

행정사무관

최준하

학생건강정책 전결 2023. 1. 9.

과장

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198 (2023. 1. 9.)

접수

우 2815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

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2036960

팩스번호 0442036438

/ [inzero85@korea.co.kr](mailto:inzero85@korea.co.kr)

/ 대국민 공개